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 중국 형사 소송법 대폭 개정, 총칙에 인권 존중 및 보장 내용 추가

지난 3월 14일,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1979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에 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차 개정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100여 곳으로 개정 폭이 50%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근절과 인권 보장을 동등하게 중요시한다는 원칙 하에 변호, 증거, 강제조치, 수사, 심판, 감독관리 등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의 '임무와 기본원칙'에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리인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총칙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인권 보장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전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고문하여 취득한 강제 자백 내용에 따라 오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증거배제 원칙을 명시하고, 구속·체포·심문 절차 등을 보완하여 수사단계에서 고문으로 강제 자백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호제도를 보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원의 심리절차를 더욱 세분화 하였습니다.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의 외국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 제한 완화

지난 3월 16일, 중국 경내 개인이 외국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경내 개인의 외국 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7년에 중국 경내 개인의 외국 상장회사 스톡 옵션 참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었습니다. 두 규정을 비교할 때, 이번 규정은 2007년의 규정보다 외환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일부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1) '스톡옵션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2) '중국 경내 회사'의 범위에 대표 처, 외국 상장회사와 지분지배관계가 있거나 실제 지배관계가 있는 중국 경내 각 모회사, 자회사 또는 동업기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3) 스톡옵션 관련 '중국 경내 대리기구'의 범위에서 '노조'를 삭제하고, (4) 외환절차 상 기존의 '외국에 외화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제출서류를 많이 간소화하였습니다.

## 5월 1일부터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 시행

5월 1일부터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 강제허가 방법」은 일찍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하여서는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국가 지적재산국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강제실시 사유로 특허 공공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에서 특허약품에 대한 강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등 사회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제품의 경우 가격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약품의 특허 강제허가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2005년에 「공공건강문제에 대한 특허 강제허가방법」이 제정되어 약물에 대한 강제허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시행 후 특허 약품에 대한 강제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윤이 낮고 정부에서 특허 강제허가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으로 해소가 될지, 약물에 대한 강제허가가 활성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